

의안
번호

425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구립 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3. 19.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425호

다. 제출일자 : 2025. 03. 04.

라. 회부일자 : 2025. 03. 13.

2. 제안이유

가. 우리 구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와 교육,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개소의 구립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주 소	규모	정원	위탁법인	위탁운영기간	개소일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2020.09.01.~ 2025.08.31	12.09.03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운영 일체
 -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이하 “돌봄센터” 라 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 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5년 8월 31일자로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여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인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습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민간위탁 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원 (현원)	종사 자수	위탁법인	25년 사업비 (천 원)
					협약기간	
구립석관동꿈나무 키우미돌봄센터	한천로79길 14-14 (석관동)	132㎡	35명 (35)	5명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329,656
					2020. 9. 1~2025. 8.31	

1)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2)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조례 제11조의23)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두어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고 구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당법인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